



**김정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jhyunkim@hanafn.com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년) / 변호사  
경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한양 근무



# 내 뜻대로 자산 이전하고 싶다면 '상속순위' 짚어라

준비 없는 상속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상속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한 상속순위의 원칙과 예외를 알아본다.

전 세계 손톱깎이 점유율 1위는 우리나라 회사인 '쓰리세븐'이다. 그런데 알짜배기였던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신세가 됐다. 창업주의 갑작스런 타계와 이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당시 유족들은 회사를 급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창업주가 사망 2년 전부터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자산까지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준비 없는 상속은 남겨진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남길 수 있으며, 맘 흘려가꾼 자산을 한 순간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산가라면 반드시 상속 원칙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상속인과 상속분에 대하여 알아본다. 상속인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친숙한 개념이지만 대습상속이나 입양, 재혼 등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유한 자산이 다음 세대에 원하는 방향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 민법상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가장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직계가족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속의 원칙도 문화와 관습의 산물로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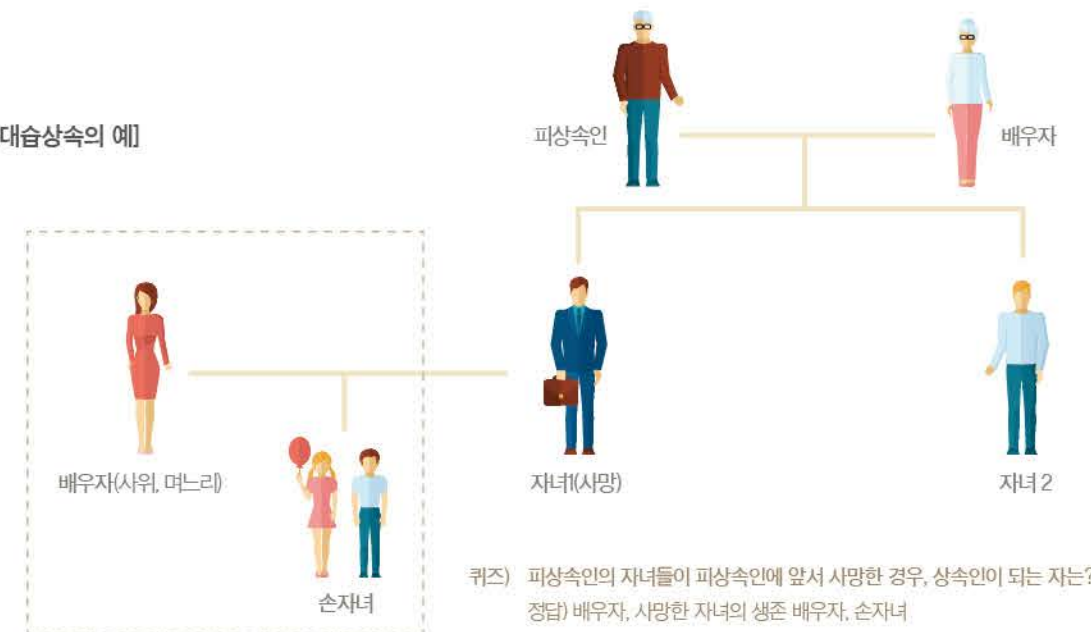
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가족법에서는 상속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 자녀가 아닌 배우자만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한다. 또한, 현재 우리는 남녀균분 상속제도에 익숙하지만, 과거 우리 민법에서는 아들과 딸,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의 상속분을 차등하여 규정했고 1990년에야 이 조항이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상속에 있어서는 선순위자만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면 선순위자인 자녀만이 상속을 받게 된다. 또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동성동복이 아닌 이복 및 이성동복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4순위 상속인의 경우 최근친을 우선으로 하므로, 3촌이 4촌에 우선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4순위 상속인인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혈족으로 성별, 결혼여부, 부계와 모계 등을 불문하고 모두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가 섞인 '혈족'에 한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고모는 방계혈족이나 고모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모든 상속인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분의 비율도 존·비속의 1.5배를 가산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3순위나 4순위의 상속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대습상속의 예]



퀴즈)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에 앞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되는 자는?  
(정답) 배우자, 사망한 자녀의 생존 배우자, 손자녀





후손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의 원칙과 예외를 두어야 한다.

**사위나 며느리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으로 되어야 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은 망인의 형제자매 대신 사위나 며느리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혈연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장자인 직계존속(부모)이 먼저 사망하는 일반적인 상속형태의 경우, 직계존속(부모)의 상속재산이 직계비속(자녀)을 거쳐 대습상속인(사위·며느리·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점이 바뀌었다고 하여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은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대습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위나 며느리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양자의 상속권은 친생자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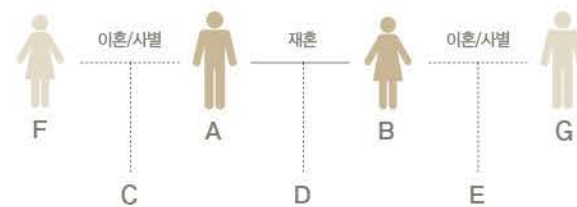
민법은 양자를 입양하는 시점부터 가족관계에 있어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양자의 경우, 우리 법원은 친생 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와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양쪽 모두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8년 이후 도입된 친양자 제도의 경우 양자가 친생 부모와의 친자관계

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 친양자는 양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 각자의 전혼 자녀는 기본적으로 상속권 없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판단이 까다롭다. 재혼으로 혼인당사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의 재혼 전 출생한 자녀와 계부(계모)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재혼을 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 본인(계부, 계모)은 법적으로 남남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를 입양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자녀가 새로운 가정의 부모 쌍방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재혼 가정의 상속**



남A의 상속인 : C, D      여B의 상속인 : D, E

- 퀴즈) A의 사망시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일까? B, C, D  
 B의 사망시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일까? A, D, E  
 C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게 되는 자는 누구일까? A, F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하여**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최상을 기원하되, 최악에 대비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다. 상속 증여 상담은 그 과정에서 ‘worst’(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점차 상속 및 증여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최근에는 증여 등을 이용한 부의 이전을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즈음부터 계획함으로써

써 절세효과 및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 자산가들의 상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 않은 이야기라도 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KEB하나은행은 ‘자산관리의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2012년부터 은행업계 최초로 자산가를 위한 상속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 영업점의 PB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지혜로운 상속 계획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인 및 상속분과 관련한 민법 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배우자의 상속순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대한민국 유언대용신탁

**대대손손 가문의 부와 영예를 잇는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유의

계약&집행 시 1회 신탁재산의 0.2%(최저 1,000만원) & 0.3%(최저 1,500만원) 관리보수 연 0.2~1%

유효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광고-155호(2017.07.06-2018.0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7-03011호(2017-07-14-2018-07-13)

문의 : 02-2002-2229

**... SUMMARY**

- ① 민법상 상속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최우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 ②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남녀가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 ③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다.
- ④ 재혼부부의 경우, 상대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상속세 납부 용도의 현금 자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⑥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한다. (작성 양식의 예 골드클럽 매거진 2017년 여름호 P24 참조)